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

적용대상: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
-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+승강기 설치 ③150세대 이상+중앙집중식 난방방식

■ **단지내도로 설치·관리자** :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

- 의무이행사항 참조

■ 의무 이행사항

- (차량 통행방법의 게시) ※미게시시 '22.11.27.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
 -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'통행속도, 서행, 일시정지,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'의 내용을 반영한 금속판(또는 현수막)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(아래 예시 참조)





- ※ 안내표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소식알림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 > 1099번-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)
- (중대한 사고의 통보) ※미통보시 과태료 부과, '20.11.27부터 시행중
 -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**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군에 통보**하여야 합니다.

중대한 사고 발생	관리주체→시·군 통보	시·군 지도·점검
사망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 발생	r), .	⇒ 현장조사(또는 서면조사) 후 교통안전시설 설차보완 등 권고

※ 단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·군에서는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·점검할 수 있습니다.

「교통안전법」 개정·시행('20.11.) 및 「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 기준」 제정·고시('21.6.)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무 이행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.